

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전공선택 지침

제정 2024. 3. 1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첨단융합학부(이하 “학부” 라 한다) 학생이 학부 내 교과과정상 전공(이하 “전공” 이라 한다) 중 하나를 주전공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학부로 입학하여 3개 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신청)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공선택 신청 전까지 모두 완수하고, 학부가 지정하는 기간에 별표 1의 ‘첨단융합학부 전공선택 신청서’ (이하 “신청서” 라 한다)를 제출해야 한다.

1. 3개 학기 등록

2. 「첨단융합과 나의 미래 1: 탐색」을 이수하고, 「첨단융합과 나의 미래 2: 체험」 중 2개 교과목 이수

3. 직전 2개 학기까지 1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전공선택 신청학기에 8학점 이상 이수 예정

4. 전공설계상담교원과의 3회 이상의 상담

②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.

1. 2순위까지의 희망 전공

2. 2순위까지의 지원동기

3. 기이수 및 이수 중인 교과목 목록

③ 학부는 필요한 경우 학부 소속 전임교원 혹은 전공설계상담교원에게 학생이 신청서에 작성한 전공선택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
④ 제3조제1항제1호의 학기 수를 산정함에 있어 국내·외 교류수학을 통한 정규학기는 포함하며,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 제3조제1항제3호의 이수 학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국내·외 교류수학 및 계절학기 이수 학점은 모두 산입한다.

⑥ 제3조제1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이수교과목, 전공설계상담교원 및 전공주임교수의 의견, 전공별 신청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전공을 배정한다.

⑦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의가 완료되기 전 휴학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한 신청서를 무효로 하며, 복학 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4조(심의·확정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전공선택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신청자의 전공을 확정한다.

1. 학생의 지원 동기
2. 각 전공에서 정한 권장 교양교과목체계의 이수 여부 (각 전공별 권장 교양교과목체계는 [표 1] 과 같이 정함)

[표 1]

전공	수학	과학	컴퓨팅
디지털헬스케어전공	· 「수학 1」 또는 「미적분학 1」 · 「수학 2」 또는 「미적분학 2」 · 「공학수학 1」	· 「물리학 1」 · 「물리학 2」	· 「컴퓨팅 기초: 처음 만나는 컴퓨터」 · 「컴퓨팅 응용: 데이터사이언스의 기초」
융합데이터과학전공	· 「수학 1」 또는 「미적분학 1」 · 「수학 2」 또는 「미적분학 2」	· 「통계학」	· 「컴퓨팅 기초: 처음 만나는 컴퓨터」 또는 「컴퓨팅 핵심: 컴퓨터로 생각하기」
지속가능기술전공	· 「수학 1」 또는 「미적분학 1」 · 「수학 2」 또는 「미적분학 2」	· 「물리학」 · 「화학」	· 「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」, 「컴퓨팅 핵심: 컴퓨터로 생각하기」, 「컴퓨팅 응용: 기계학습 개념 및 실습」, 「컴퓨팅 응용: 자연어처리의 기초」, 「컴퓨팅 응용: 데이터사이언스의 기초」 중 택 1
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	· 「수학 1」 또는 「미적분학 1」 · 「수학 2」 또는 「미적분학 2」 · 「공학수학 1」 · 「공학수학 2」	· 「물리학 1」 · 「물리학 2」	· 「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」, 「컴퓨팅 핵심: 컴퓨터로 생각하기」, 「컴퓨팅 응용: 기계학습 개념 및 실습」, 「컴퓨팅 응용: 자연어처리의 기초」, 「컴퓨팅 응용: 데이터사이언스의 기초」 중 택 1
혁신신약전공	· 「생명과학을 위한 통계학」	· 「화학 1」 · 「화학 2」 · 「생물학 1」 · 「생물학 2」	

※ 「수학 1」, 「미적분학 1」은 「고급수학 1」로 대체될 수 있음

※ 「수학 2」, 「미적분학 2」는 「고급수학 2」로 대체될 수 있음

3. 희망 전공 소속 교원과의 면담 결과

4. 전공설계상담교원 의견

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공이 2순위 이내에 없는 경우 전임교원 2명 이상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다른 전공으로 재신청하도록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제5조(변경) ① 전공확정 이후 주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전공확정 이후 소속 전공 개설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추가 이수
2. 전공확정 이후 전공설계상담을 1회 이상 진행
3.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전공주임 교수와의 1회 이상의 심층 면담

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 2의 ‘첨단융합학부 전공변경 신청서’ (이하 “변경 신청서”라 한다)를 제출해야 한다.

③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1. 전공변경 신청 사유
2. 학업 계획
3. 기이수 및 이수 중인 교과목의 목록

④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전공 변경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며, 심의가 완료된 다음 학기부터 주전공을 변경한다.

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은 결과를 통보받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⑥ 학생이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.

⑦ 주전공 변경 심의 및 재심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.

제6조(그 밖의 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칙 (2024. 3. 1.)

이 지침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